

# 예 산 총 칙

제 1 조 2015년도 제1회 추가경정 일반회계 및 특별회계 세입·세출예산 총액은 다음과 같다.

(단위:천원)

구	분	세입·세출예산총액	기정예산액	증감액
합	계	5,381,220,764	5,136,641,957	244,578,807
일	반 회 계	4,663,924,104	4,447,671,337	216,252,767
특	별 회 계	717,296,660	688,970,620	28,326,040
	기 타 특 별 회 계	428,934,632	424,083,066	4,851,566
	농어촌주택사업	10,178,689	10,178,689	0
	의료급여기금	388,722,943	383,871,377	4,851,566
	동부권특별회계	30,033,000	30,033,000	0
	공 기 업 특 별 회 계	288,362,028	264,887,554	23,474,474
	지 역 개 발 기 금	288,362,028	264,887,554	23,474,474

제 2 조 세입·세출 예산의 명세는 별첨 “세입·세출 예산”과 같다.

제 3 조 채무부담행위사업은 “해당 없음”으로 한다.

제 4 조 계속비 사업은 별첨 “계속비 사업조서”와 같다.

제 5 조 명시이월사업은 “해당없음”으로 한다.

제 6 조 일반회계 예비비는 44,662,513천원으로 한다.

제 7 조 일반회계 지방채차입한도액은 “해당 없음”으로 한다.

제 8 조 지방재정법 제47조 제1항 단서규정에 의한 기준인건비에 포함된 경비 및 동일 부서에서 동일 부문에 있는 정책사업 간의 경비는 상호 이용할 수 있다.